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202
2026.11.9.

美 CBP가 밝힌 관세집행 방향

KOREA CUSTOMS WEEK



[이주의 초점]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서 불법 우회환적·원산지 허위신고 단속 강조 (4p)

[위클리뉴스]
해외 생산제품과 달라도 기술·기능 유사하면 '유턴기업' 인정
해수부, 수산물 수출입 시 어획·증명 절차 마련
[美 중간선거] 민주당, 상·하원 장악… 트럼프 관세정책은? (8p)

[오피니언: EU 관세관 통신]
EU 관세개혁, 60년 만의 대변화
2026년 9월 발효한 EU 새 관세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 일정 (14p)

[판례 동향]
연속 거래에서 과세가격결정 기준거래 (25p)

[품목분류 동향]
흑연 소재 전기저항 히터의 HS Code (36p)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AI 생성 이미지

발 행 인 김종호
편 집 인 남성훈

총 괄 김민정

취 재 강보람 aorigaski@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김다솔 kds5817@kctdi.or.kr

마 케 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 자 인 경성문화사

발 행 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일 2026년 11월 9일(통권 제2202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CONTENTS

이주의 초점

04 美 CBP 관세회피 단속, 수입신고 넘어 공급망까지 검증

08 **Weekly News**

오피니언

14 **EU 관세관 통신**

60년 만의 대변화, EU 관세개혁

최영환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관세관

관세행정실무해설

22 **질의응답사례**

기부물품의 관세 면제

판례동향

25 **관세판례해설**

연속 거래에서 과세가격결정 기준거래

이혜경 관세청 법무담당관실

품목분류동향

36 **세번 바로잡기**

흑연 소재의 전기저항 히터의 HS Code

이영주 중앙관세분석소

美 CBP 관세회피 단속, 수입신고 넘어 공급망까지 검증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서 관세집행 강화 강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원산지 허위신고와 우회 환적 등 관세회피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수입신고 내용뿐 아니라 원재료 조달부터 제조·가공, 운송에 이르는 공급망 전반을 검증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관세집행 방향은 관세청이 11월 2~4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개최한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Korea Customs Week) 2026’에서 소개됐다. 이번 행사에는 對美·對EU 수출기업 158개사를 비롯해 미국 CBP, 주한 EU 대표부, 주요국 관세당국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총 721명이 참석했다.



사진: 관세청,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행사 첫날에는 미국 CBP 실무진이 직접 미국의 관세·통관 제도와 실제 집행 사례를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CBP는 미국의 관세조치가 복잡해진 만큼 수출기업이 제품의 원산지와 생산공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 우회환적·원산지 허위신고 등 무역사기 단속 확대

이날 '미국의 관세회피 단속과 수입신고 적정성 검증'을 주제로 발표한 CBP 현장운영실 화물운송보안국의 로리 왈시(Rory Walsh) 무역운영과장은 **불법 우회환적과 의도적인 품목분류 오류, 저가신고를 주요 관세회피 수법으로 지목**했다. 그는 CBP가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과 국제협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BP는 수입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후의 신고자료를 분석하고, 상업송장과 전자신고정보, 공급망 기록 등을 대조해 이상 징후를 찾아낸다. 미국 전역의 10개 전문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분석하며, 신고내용에 의문이 생기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화물검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한다.

단속 범위는 반덤핑·상계관세 회피에 그치지 않는다.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과 강제노동 관련 고위험 공급망도 검사 대상이다. 위반행위에 따라 관세 추징과 제재, 화물 압류, 반입 거부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형사사건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처리한다.

미국 법무부는 2025년 8월 29일 국토안보부와 협력하는 범정부 무역사기 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2026년 7월에는 무역사기 단속 관련 지침서인 'A Resource Guide to Trade Fraud Enforcement'를 공개했다. 해당 가이드는 관세회피와 원산지 허위신고 등 무역사기 유형에 관한 법적 근거와 집행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수입업자뿐 아니라 제조업체 등 공급망 참여자도 위반행위에 관여한 경우 민사·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됐다.

미국 무역사기 단속 가이드 주요사항(2026.7. 발표)



정리 및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FTA 원산지 충족해도 안심 못 해··· 비특혜원산지 별도 확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조성대 통상연구실장은 한·미 FTA의 특혜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미국의 추가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FTA 원산지증명서 확보와 별개로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단 기준에 따라 생산공정과 주요 부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산지정보원 권민경 신통상규제팀장은 미국 CBP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소개하며 핵심 부품의 기능과 각국에서 수행한 제조공정 등이 원산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LED 램프와 절단기다. LED 램프의 경우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광원 기능을 담당하는 인쇄회로기판(PCBA, 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을 베트남에서 생산한 뒤 중국에서 최종 조립했다. CBP는 베트남에서 생산된 PCBA가 중국으로 수입될 당시 이미 최종 용도가 정해져 있었고, 중국에서 후속 공정을 거친 뒤에도 용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베트남을 원산지로 판정했다.

반면, 절단기는 PCBA가 사용됐지만 중국이 원산지로 판정됐다. PCBA만으로는 절단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중국에서 생산된 기계 부품과 최종 조립공정이 중요하게 고려됐다. CBP는 중국산 부품의 비용과 조립에 투입된 시간도 PCBA 생산에 소요된 비용·시간보다 상당히 컸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권민경 팀장은 제품별 생산공정과 부품의 기능 등에 따라 비특혜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CBP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원재료부터 제3국 가공까지··· 공급망 전체가 검증 대상

CBP 무역실 반덤핑·상계관세사업과장 알렉산더 암두르(Alexander Amdur)는 “제3국을 거친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려면 원재료 구매주문서, 공급업체의 원산지 확인자료, 생산일지,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기술문서 등 생산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3국 업체와 생산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자와 생산·공급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갖춰야 한다. 선하증권과 포장명세서 등 운송자료, 상업송장과 대금지급 기록 등 거래자료 역시 검증에 활용된다.

알렉산더 암두르 과장은 “제3국을 경유한 물품이라고 해서 모두 불법 우회환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가공·생산 과정과 물품의 이동 경로를 관련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P는 1차 협력사에 그치지 않고 2차·3차 협력사 등 상위 공급망까지 파악할 것을 권고했다. 원재료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공급업체가 제공한 정보와 실제 제조기록이 일치하지 않으면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세관의 정보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CBP는 수입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면 정보요청서인 'CBP Form 28'을 발송할 수 있다.

로리 왈시 과장은 상업송장과 미국 수입신고 요약서인 CBP Form 7501의 기재내용이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한 제품에 대한 품명이나 거래정보가 서류마다 다르면 CBP가 신고내용을 추가로 확인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보요청(Form 28)을 받았을 때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전사적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과 준법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자료 제출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요청서에 기재된 CBP 담당자에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연장 여부는 개별 요청에 대한 CBP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CBP Form 28을 받은 기업이 원산지나 품목분류, 과세가격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면 추가 검증이나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CBP Form 29'는 CBP의 사후심사 결과에 따라 내리는 과세결정 통지서다. 관세 추징이나 관세율 변경, 원산지 불인정 등의 조치를 통지하는 데 사용된다.

관세회피에 따른 법적 책임도 주의해야 한다. 조성대 실장은 미국의 무역사기 단속이 강화되면서 기업뿐 아니라 위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인지하고도 방치한 임직원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력사의 위법행위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외면한 경우에도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관세·통관 담당 부서뿐 아니라 구매, 생산, 물류, 재무 부서가 협력해 원산지 판정과 품목분류, 과세가격 산정에 사용한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CBP가 원재료 조달부터 최종 선적까지의 기록을 확인하는 만큼 관련 자료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세관의 정보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김성은 기자 |

해외 생산제품과 달라도 기술·기능 유사하면 '유턴기업' 인정

「해외진출기업복귀법」 2026년 11월 23일 시행 예정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달라도 핵심기술이나 기능, 공급망 연계성이 있으면 국내복귀(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핵심 제조시설을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외공장을 유지하면서 국내복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11월 3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도 정비해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의 동일성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두 사업장의 제품·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같은 중분류에 속하거나 소재·부품, 생산공정이 유사해야 국내복귀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국내에서 생산할 제품·서비스가 해외 생산품과 다르더라도 핵심기술과 기능, 공급망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사성을 인정**한다.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구조조정)해야 했던 국내복귀 요건도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나 미래자동차 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등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기술이나 제품 확인서를 보유해야 구조조정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별도의 확인서가 없더라도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투자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구조조정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마더팩토리는 생산기술 연구개발과 시제품 실증생산, 표준화 등을 통해 국내외 생산거점의 기술·생산·품질을 관리하는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핵심 제조시설이다.

해외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거나 기존 연구소를 확충하는 경우도 국내복귀로 인정**한다. 생산시설 이전뿐 아니라 연구개발 기능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한 것이다.

국내복귀기업 선정평가와 보조금 심의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도 신설한다. 기업 규모와 투자지역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기준도 정비했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변화
제품 동일성	해외 생산품과 달라도 핵심기술·기능·공급망 연계성이 있으면 인정
해외공장 유지	국내에 첨단·공급망 분야 마더팩토리를 투자하면 구조조정 의무 면제 가능
연구개발 투자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신설·확충도 국내복귀로 인정
심사·지원	자문위원회 신설 및 기업 규모·투자지역을 반영한 보조금 기준 마련

그간 기업들의 국내복귀 과정에서 행정절차 외에도 자금과 인력, 사업장 확보가 부담으로 지적됐다. 인천연구원은 2025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활성화 방안 구상'에서 국내복귀를 추진하거나 검토한 기업들이 복잡한 절차와 부족한 지원, 낮은 정보 접근성을 제도 활용의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첨단·공급망 분야의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해 국내 투자와 핵심 제조역량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성은 기자 |

해수부, 수산물 수출입 어획 확인·증명 절차 마련

해양수산부가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수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2027년 6월 17일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어업인은 수산물을 잡고(어획) 다른 배로 옮기고(전재) 육지로 내리는 작업(양륙) 보고를 해야 한다.

어획·전재 보고는 앱이나 서면·전화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양륙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산물 산지 위판장에 판매 위탁한 수산물은 해당 정보로 보고를 대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보고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제정안은 **수출 시** 상대국에서 수산물의 합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할 경우 필요한 **어획확인서 기반 발급절차**(시행규칙 제8조·제9조)와 **수입 시 대상 품목의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어획증명서 제출절차**(시행령 제7조·제8조, 시행규칙 제10조·제11조)를 마련했다.

수입 수산물 어획증명서 제출이 예외되는 경우(시행령 제8조)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수출입 수산물이 불법으로 어획·거래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불법으로 잡힌 수산물의 유통 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총 무게가 2톤 미만인 어선은 2028년 6월 17일부터 보고의무가 적용되며, 이 기간에는 보고의무와 상관없이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부칙 제2조).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

	주요사항	관련 조항	조문 주요 내용
시행령	양륙장소 관리 및 검색	제5·6조	지정 양륙장소 이용이 어려운 경우 비지정 장소 양륙 허용 위반 시 양륙 금지·어선 출항 제한 등 조치
	수입 수산물 어획증명서	제7·8조	불법어업 고위험 수산물 등 증명서 제출 대상 지정 국가 간 협정 및 비상업적 연구 등에 대한 제출 예외 규정
시행규칙	어획·전재·양륙실적 보고	제4·5·7조	어획·전재·양륙실적은 다음 날 24시까지 보고 위판장 위탁판매 물량은 별도 보고 면제
	어획확인서 발급·전달	제8·9조	무허가 조업·금어기 위반 등 확인 후 어획확인서 발급 수산물 양도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유통사업자 등에 전달
	수출입 수산물 어획증명서	제10·11조	수출 시 어획확인서 번호로 증명서 발급 신청 수입 시 어획 어선 국적국의 증명서 제출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393만 5,000톤으로, 생산금액은 10조 2,366억원이다. 한편,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25년 수산물 수출액은 전년대비 9.6% 증가한 33억 2,400만달러, 수입액은 7.5% 늘어난 64억 3,600만달러로 집계됐다. | 김다솔 기자 |

조달청, 외자구매 절차 간소화… 계약기간 10일 이상 단축 추진

조달청이 공공기관 등의 해외물품 구매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자구매 제도를 개선한다. 계약절차와 규격검토를 간소화하고 조달수수료 할인 및 사전컨설팅을 확대해 '중앙조달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외자구매는 슈퍼컴퓨터·대형 헬기처럼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국제입찰·계약, 운송·통관 등 전문적인 절차가 요구된다.

우선 조달요청부터 계약체결까지 평균 86일이 소요되는 외자구매 계약기간을 10일 이상 단축한다. 또한 10만달러 이상 외자물품에 적용되는 추가 규격검토를 일부 간소화한다. 전자

현미경을 대상으로 2027년 3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계약기간이 약 7일 추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부터 공공기관과 사립학교, 연구기관 등 기타기관의 외자구매 조달수수료를 5% 할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매금액 100만달러 기준 수수료율은 1.2%에서 1.14%로 낮아지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달수수료 고시」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조달청의 '대한민국 조달제도 기본서'에 따르면, 외자구매는 해외 공급업체의 선적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계약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조달청은 설치·시운전이 필요한 일부 장비의 경우 설치 완료 등을 확인한 뒤 계약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행을 관리하고 있다. | 김다솔 기자 |

[美 중간선거] 민주당, 상·하원 모두 탈환… 트럼프 관세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했지만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에 따른 기존 관세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대신 민주당이 의회 운영권을 갖게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과 집행절차에 대한 조사·감독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11월 5일 발표한 '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민주당은 11월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20년만에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확보했다. 2027년 1월 출범하는 제120대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의회 운영을 주도하게 된다.

KOTRA 워싱턴 D.C. 무역관은 선거 결과가 즉각적인 관세 철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무역관이 5일 발표한 '통상·산업 영향 전망'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에 적용되는 232조 관세와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는 현행 법률에 따라 계속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관세가 산업과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과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가 관세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11월 5일(미 동부시간) 기준 민주당 의석은 양원 모두 이에 미치지 못한다.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국제통상 전문 이정운 변호사(Pierce Lee)는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동조하지 않는 한 새 의회가 법률을 통해 현행 관세를 직접 없애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조성대 통상연구실장 또한 11월 2일 관세청이 주최한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6'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상대로 공세를 펼칠 정치적 환경은 조성되지만, 통상정책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성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법률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 관세조치를 시행했다"며, "트럼프 1기에 도입한 對중국 301조 관세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된 만큼, 무역적자와 불공정 무역행위라는 정책 배경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현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거론되는 관세 제한 법안도 232조와 301조 관세보다는 캐나다에 대한 관세법 338조 조치와 무역법 122조 관세를 겨냥하고 있다.

이정운 변호사는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338조 관세를 제한하는 방안이 새 의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며, "**232조와 301조 관세는 상무부와 무역대표부의 조사 절차를 거친 행정부 조치이기 때문에 새 의회가 청문회를 열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수준의 조사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주요 관세 법적근거

무역법 301조(1974년)	對중국 관세, 강제노동 관세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및 관세·기타 대응조치
무역확장법 232조(1962년)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관세	수입품의 국가안보 영향 조사 및 관세·수입제한
관세법 338조(1930년)	캐나다산 제품 대상 관세	외국의 차별적 통상 조치에 대응한 추가관세·수입제한

무역협회 미주본부에 따르면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당선인이 2024년 미국 정부에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수입 허용 물량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고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범위와 우회수출 조사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도 공동 발의한 만큼 민주당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견제하면서도 철강 등 주력산업 분야는 무역구제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KOTRA는 對美 수출기업에 미국 품목번호(HTSUS)와 원산지, 파생제품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232조·301조 관세의 중첩 및 제외 요건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 중인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수출기업은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미국 수입자와 관세 부담 주체, 수출가격 조정 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김성은 기자 |

EU,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사 실시… 韓 수출 영향 우려

EU 집행위원회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다. 외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EU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산부는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자동차 업계의 對EU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EU 시장접근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다고 10월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일반 하이브리드차(HEV, Hybrid Electric Vehicle)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등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신차**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의 하이브리드차 수입 물량은 2023년 약 96만대에서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약 142만대로 47.9% 증가했다.

수입 증가의 배경으로는 중국의 하이브리드차 수출 확대가 꼽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브뤼셀 무역관이 10월 19일 발표한 'EU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도입 추진 동향'에 따르면, EU와 중국은 지난 10월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수출량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산 순수전기차에는 최혜국(MFN, Most-Favoured Nation) 관세 10% 외에 상계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반면, 하이브리드차에는 MFN 관세 10%만 적용되면서 EU의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하이브리드차를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중국산 자동차의 수입 증가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상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관세 인상이나 수입물량 제한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다. WTO 협정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 등이 입증돼야 한다.

다만, 이번 조사는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만큼, 향후 조치가 발동되면 한국산 하이브리드차도 관세 인상이나 수입물량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 김다솔 기자 |

60년 만의 대변화, EU 관세개혁

2026년 9월 발효한 EU 새 관세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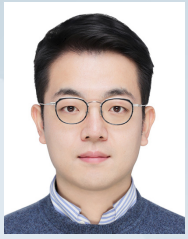

최 영 환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관세관

Ⅰ. 들어가며

EU는 관세동맹에서 출발한 공동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 6개국은 1968년 7월 1일 국가간의 관세를 철폐하고 역외 수입품에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을 출범했다. 그 뒤 여러 규정과 지침에 흩어져 있던 관세 관련 법령은 1992년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을 통해 처음으로 하나로 묶였다. 2013년에는 이를 대신할 현행 통합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이 제정돼 2016년 5월부터 본격 적용되고 있다. 현재 27개 회원국은 하나의 관세법을 따르고, 각국이 걷은 관세의 4분의 3을 EU 공동예산으로 보낸다.

2022년 3월 EU 집행위원회가 전직 장관 등 전문가 12명으로 꾸린 자문단(WPG, Wise Persons Group)이 관세동맹을 진단한 자문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관세동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법을 따르는데도 회원국마다 통제 관행과 우선순위, 위반에 대한 제재가 달라 EU의 국경이 사실상 27개로 나뉘어 있다고 본 것이다. 물품이 어느 회원국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시민이 받는 보호 수준도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지금 체제를 그대로 두면 중대한 안보나 안전 위협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담았다.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5월 관세개혁안을 내놓으며 이 진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보고서가 권고한 EU 차원의 데이터 체계와 관세 기구는 이번 개혁의 두 기반이 됐다. 관세데이터허브(EU Customs Data Hub)와 EU 관세청(EUCA, EU Customs Authority)이다. 이 개혁을 담은 **새 관세법[Regulation (EU) 2026/2108]은 2026년 9월 16일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9월 20일 발효됐다. EU 관세청 설립 같은 일부 조항은 발효와 함께 적용됐고, 본격 적용은 2027년 9월 21일부터**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개혁이 관세동맹 출범 이후 가장 포괄적이라고 설명한다.

이 글에서는 브뤼셀에서 지켜본 EU 관세개혁의 배경과 주요 내용, 일정을 정리하고, 우리 기업이 점검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왜 지금 바꾸나

세관의 업무는 관세 징수를 넘어 제품 안전이나 환경처럼 다른 법령이 정한 수입요건을 국경에서 확인하는 데까지 넓어져 왔다. EU 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65년 이후 관세국경에서 집행해야 하는 EU 법령은 시행을 앞둔 것까지 합쳐 348건이고, 이 가운데 287건(82%)이 2000년 이후에 만들어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사례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와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 등을 꼽는다.

소액 전자상거래 물량도 급증했다. 그동안 관세가 면제되던 150유로 이하 물품은 2022년 약 14억개에서 2025년 59억개로 네 배 넘게 늘었다. 집행위원회가 2026년 1월 발표한 EU 차원의 집중 단속 결과를 보면, 역외에서 전자상거래로 들어온 장난감과 소형 전자제품 2만 점 가운데 절반 이상이 EU 제품 기준에 맞지 않았다. 분석소 검사를 거친 제품 가운데서는 84%가 위험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세관이 실제로 반입을 거부한 물품은 2024년 기준 100만개당 평균 13개에 그쳤다.

새 관세법도 전문(前文)에서 기존 제도의 약점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 위험물품에서 시민을 지키는 조치가 부족했고, 전자상거래로 늘어난 물량을 감당할 역량도 모자랐다. 지금의 전산 구조로는 통관을 디지털화하기 어려웠고, 관세동맹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체계가 없어 회원국마다 법을 다르게 집행했다.

Ⅲ. 무엇을 바꾸나

EU 집행위원회가 내건 개혁 목표는 절차 간소화와 통제 강화 두 가지다. 통관 절차를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고, 어떤 화물을 검사할지 가려내는 위험관리를 EU 차원으로 끌어올려 단일시장을 더 확실히 지키겠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에는 맞춤형 제도를 새로 둔다. 27개 회원국 세관이 EU 외부 국경 어디에서나 하나처럼 움직이게 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이를 뒷받침하는 두 기반은 모든 통관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는 '관세데이터허브'와 이 데이터로 EU 전체의 위험을 분석하는 'EU 관세청'이다.

EU 관세개혁의 목표와 두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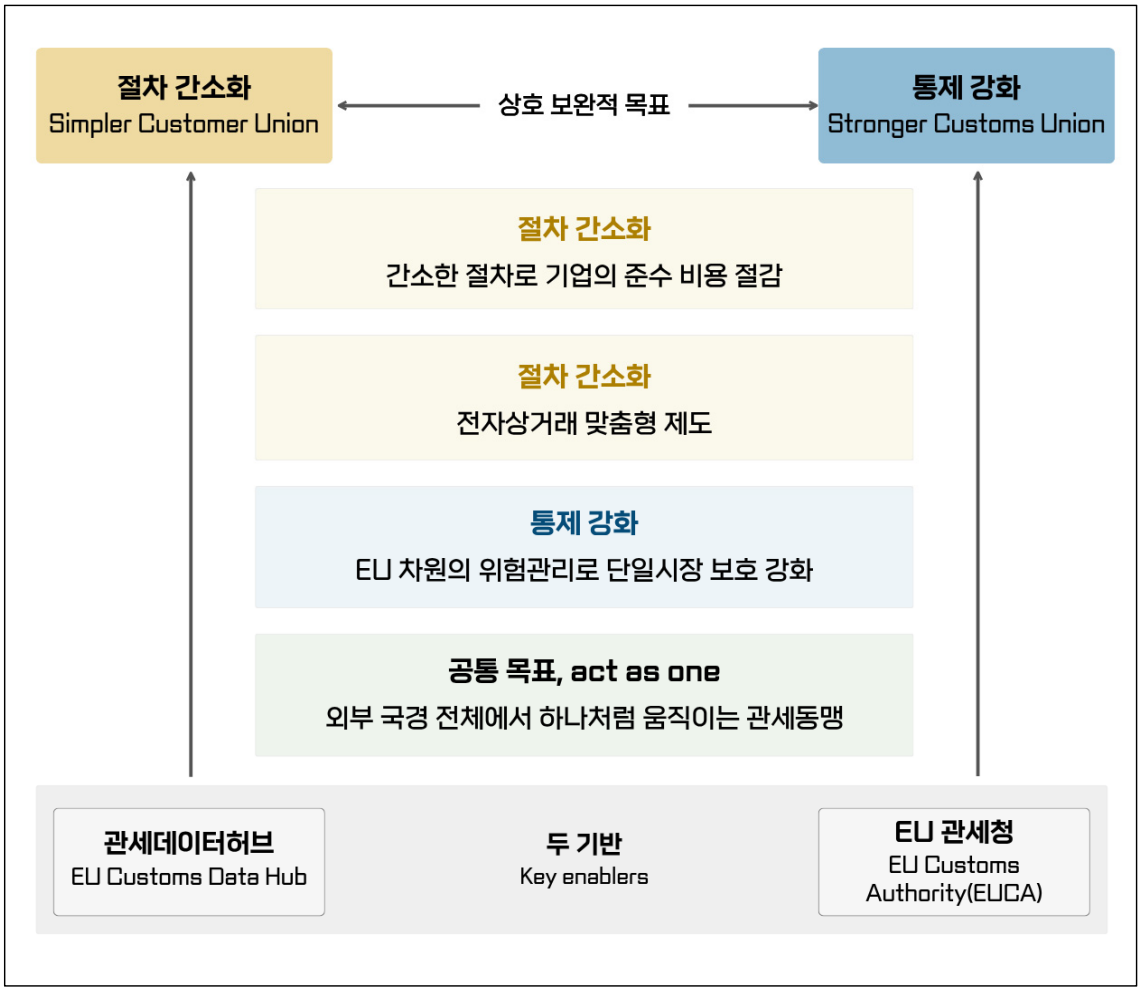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 DG TAXUD 발표자료 'Reform pillars'(2026.6.26.), 정리: 저자 재구성

1. 신고서 대신 데이터로

새 관세법은 **신고서 중심의 통관을 데이터 중심의 통관으로 바꾼다.** 지금은 수입할 때마다 신고인이 제조사와 판매자, 운송인에게서 정보를 모아 세관 서식에 맞춰 신고서를 낸다. 앞으로는 신고서를 따로 만드는 대신 기업이 실제 거래에 쓰는 데이터를 그대로 통관에 활용한다. 데이터를 낼 의무도 신고인이 아니라 수입자(Importer)와 수출자처럼 물품에 책임을 지는 쪽이 진다. 이들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대로, 늦어도 세관이 물품을 내주는 반출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세관이 반출 전에 위험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2. 관세데이터허브

기업이 낸 데이터가 모이는 곳이 데이터허브다. 데이터허브는 그동안 회원국마다 개별 운영해 온 전자통관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다. 지금 27개 회원국이 개별 운영하는 시스템은 111개에 이른다. 그래서 기업은 물품이 들어오는 나라의 시스템에 맞춰 신고해야 하고, 27개국 세관이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중앙 데이터베이스도 없다. **데이터허브가 가동되면 기업은 어느 나라로 물품을 들여오든 하나의 창구에 데이터를 내면 된다. 처음 제출한 데이터는 다음 거래에도 최대한 다시 쓸 수 있게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개혁으로 회원국이 운영비를 해마다 20억유로 넘게 아낄 수 있다고 기대한다. 기업도 행정 비용을 해마다 27억유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새 관세법은 데이터허브 설비를 EU 안에 두고 집행위원회나 EU 관세청이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3. 2026년 9월 법적으로 설립된 EU 관세청

EU 관세청은 데이터허브에 모인 수출입 데이터를 분석해 먼저 검사할 고위험 화물을 골라낸다. 우선 통제 분야와 공통 위험기준을 정하는 일도 돕는다. 프랑스 릴(Lille)에 자리 잡으며, 2026년 9월 20일 새 관세법 발효와 함께 법적으로 설립됐다.

집행위원회가 밝힌 정원은 285명이다. 통관과 검사 같은 현장 업무는 지금처럼 회원국 세관이 맡는다. 다만 회원국 세관은 자체 위험관리에 더해 EU 공통 위험기준과 EU 관세청의 통제 권고도 적용한다.

새 관세법은 EU 관세청이 집행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3국 세관이나 국제기구와 실무 협력 약정을 맺을 수 있게 했다. 다른 나라 관세당국으로서는 집행위원회 외에 EU 관세청이라는 실무 협력 창구가 하나 더 생긴 것이다.

4. 수입자 책임과 신뢰·점검 사업자

새 관세법은 수입자의 책임을 크게 늘린다. 수입자는 원칙적으로 EU 안에 설립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EU에 거점이 없는 우리 기업이 스스로 수입자가 되려면 EU에 설립된 간접관세대리인(indirect customs representative)을 둬야 한다.** 간접 관세대리인은 자기 이름으로 고객의 통관을 대신 처리하는 대리인으로, 이 경우 수입자로 간주돼 그 의무를 모두 진다. 반출 전에 통관 데이터를 세관에 내고, 관세 납부를 보장하며, 물품이 제품 안전 같은 다른 법령의 요건에 맞도록 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법규를 잘 지켜 온 기업을 위해 기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외에 신뢰·점검 사업자(Trust and Check trader) 지위가 새로 생긴다. EU에 설립돼 2년 이상 통관 실적이 있는 수입자와 수출자, 간접 관세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지위를 얻으려면 AEO와 비슷한 요건을 갖추고, 물품의 이동과 법규 준수 현황을 기록한 자체 전자 시스템에 세관이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대신 통과운송(우리의 보세운송) 절차 등에서 간소화 혜택을 받는다. 물품이 사업장에 도착하면 세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반출할 수도 있다.

5. 위반과 제재의 공통 틀

현행 통합관세법은 위반을 어떻게 제재할지 회원국에 맡겨 뒀다. 그래서 같은 위반이라도 어느 나라 세관에 걸리느냐에 따라 제재가 달랐다. 새 관세법은 EU 공통 기준을 정했다. 먼저 모든 회원국이 반드시 제재해야 할 위반행위 목록을 뒀다. 데이터를 틀리게 내거나 빠뜨린 경우,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나 수출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제재 수위를 정할 때는 고의였는지, 반복했는지, 스스로 바로잡으려 세관에 협조했는지를 따지도록 했다. 다만 이는 최소 기준이어서 회원국은 이보다 무겁게 제재할 수 있다.

Ⅳ. 이미 시작된 전자상거래 변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개혁 조치가 가장 먼저 시행되고 있다. 7월 1일부터 150유로 이하 소포에도 관세가 붙었다.

우편물이거나 수입 부가가치세 일괄신고제도(IOSS, Import One Stop Shop)로 판매 단계에서 부가세를 미리 걷은 물품에는 품목(item)당 3유로를 정액으로 매기고, 그 밖의 물품에는 정상 관세를 매긴다.

여기서 품목이란 한 소포 안에 든 물품 가운데 HS Code와 품명, 원산지가 같은 것끼리 묶은 단위다. 같은 티셔츠가 다섯 장이면 3유로, 티셔츠와 손목시계가 함께 들어 있으면 두 품목이므로 6유로다. 이 3유로 임시 관세는 2028년 7월 데이터허브가 예정대로 가동되면 끝나고, 그 뒤로는 모든 전자상거래 물품에 정상 관세가 적용된다.

11월 1일부터는 역외에서 EU 소비자에게 직접 보내는 원거리판매(distance sales) 물품에 금액과 상관없이 품목당 2유로의 EU 취급수수료(handling fee)가 더해졌다. 같은 날부터 전자상거래 물품을 신고할 때는 제품식별자(PID, Product Identifier)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직구로 주문한 제품을 반품해도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

새 관세법은 전자상거래 전용 보세창고에 대량으로 들여와 파는 물품에는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별 소포보다 대량 반입을 유도해 세관이 관리하기 쉽게 하려는 것이다. 이 보세창고 제도는 2028년 7월에 시작되며, 수수료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원거리판매 수입자(importer for distance sales)라는 개념도 2027년 9월 새 관세법의 본격 적용과 함께 도입된다. 전자상거래 판매자나 중개 플랫폼 가운데 한쪽이 수입자가 돼 관세 납부와 각종 규제 준수를 책임진다. 이들의 통관을 대리하는 관세대리인은 AEO나 신뢰·점검 사업자 지위를 갖춰야 한다.

Ⅴ. 단계별 일정

EU의 이번 관세개혁은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전자상거래 조치가 올해 7월 먼저 시작됐고, **새 관세법은 2027년 9월 2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2028년 7월에는 데이터허브가 전자상거래 통관부터 가동되고, 2034년 3월부터는 모든 통관이 데이터허브로 넘어간다.**

EU 관세개혁 주요 일정

시점	내용
2026.7.1.	150유로 이하 소액물품 관세 면제 폐지, 품목당 3유로 임시 관세
2026.9.20.	새 관세법 발효, EU 관세청 법적 설립
2026.11.1.	EU 취급수수료(품목당 2유로), 제품식별자(PID) 신고 의무화
2027.9.21.	새 관세법 본격 적용, 현행 통합관세법 폐지, 신뢰·점검 사업자 제도 도입
2028.7.1.	데이터허브 전자상거래 적용(원거리판매 수입자와 IOSS 이용자부터), 전자상거래 전용 보세창고 도입, 3유로 관세 종료, 정상 관세 부과
2031.3.1.	데이터허브 모든 사업자 선택 사용
2034.3.1.	데이터허브 전면 의무화, 신고서 체제 종료

자료: 새 관세법[Regulation (EU) 2026/2108] 등 관련 EU 법령, 집행위원회 공식 발표자료, 정리: 저자

집행위원회는 하위 법령 제정과 EU 관세청 출범 준비, 데이터허브 구축을 서로 연결된 세 가지 작업으로 본다. 2028년 7월 1일 전자상거래 데이터허브 가동에 맞춰 세 가지 작업을 동시에 갖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정은 바뀔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2027년 12월 1일까지 데이터허브를 예정대로 가동할 수 있을지 평가해 어렵다고 판단하면 3유로 임시 관세 연장을 제안할 수 있다.

Ⅵ. 우리 기업이 점검할 것

첫째, 수입자 의무를 챙겨야 한다. **새 관세법에서는 통관 데이터 제출부터 관세 납부, 제품 안전 같은 규제 준수까지 모든 책임이 수입자에게 집중된다.**

EU 법인이 없는 우리 기업이 스스로 수입자가 되려면 현지에 설립된 간접 관세대리인을 둬야 하므로, 어떤 대리인을 고르느냐가 중요해졌다. 간접 관세대리인은 고객의 의무를 함께 떠안기 때문에 고객이 규정을 어기면 자신도 제재 대상이 된다. 원거리판매라면 대리인이

AEO나 신뢰·점검 사업자 지위까지 갖춰야 한다. 현장에서 만난 일부 플랫폼 관계자들은 화장품이나 아동용 완구처럼 규정 위반 위험이 높은 품목은 이런 지위를 갖춘 EU 대리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둘째, 우리 제품에 적용되는 EU 법령을 파악해야 한다. 수입자가 지는 책임에는 관세 납부뿐 아니라 다른 법령의 요건을 지키는 일도 들어 있다. 앞에서 본 348건의 법령 가운데 자사 제품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무역정보 포털 'Access2Markets'의 'My Trade Assistant'에 HS Code와 수출국, 수입국을 넣으면 관세율과 세금, 통관 절차, 제품 요건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제품 데이터를 미리 정비해야 한다. 앞으로 세관은 신고서 대신 기업이 실제 거래에 쓰는 데이터로 위험을 가려낸다. 세관에 낸 품명이나 HS Code, 원산지 같은 기본 정보가 틀리면 고의가 아니어도 위반이 될 수 있다. 11월부터 전자상거래 물품을 신고할 때 내는 제품식별자도 마찬가지다. 판매자의 상품번호와 제조사의 모델번호, 표준 바코드가 있으면 바코드도 함께 제출한다.

Ⅶ. 맺음말

EU는 여전히 우리 기업의 큰 시장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對EU 수출은 2023년과 2024년 680억달러대를 유지하다가 2025년 701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번 EU 관세법 개혁의 핵심은 신고서 중심의 통관을 데이터 중심으로 바꾸고 수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다. 개혁이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 기업도 일정에 맞춰 미리 대비해야 한다.

컬럼비아대 아누 브래드퍼드(Anu Bradford) 교수는 EU 규제가 기업의 생산 기준과 각국의 입법을 거쳐 세계로 퍼지는 현상을 '브뤼셀 효과'라고 불렀다. EU 관세개혁도 다른 나라의 제도 논의에서 참고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EU 관세개혁을 꼼꼼히 살펴 제품 데이터와 법규 준수 체계를 갖춰 둔다면, 앞으로 다른 나라의 통관 개혁에도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1)]

1) 이 글은 새 관세법[Regulation (EU) 2026/2108]을 비롯한 EU 법령 원문과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발표자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2027년 이후 일정은 EU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수입

중국의 기부물품을 한국으로 들여와 국내 비영리 단체와 해외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기부물품으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2호에서는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선시설·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에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 면제 시 부가세가 함께 면제됩니다.

다만,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이라도**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물품만 관세 및 부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의식(儀式)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선시설·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4.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의2.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원·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이에 해당하는 기관에 기부하는 물품임이 명확한 경우, 「관세법 시행규칙」 제40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세신청) 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사업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 또는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관세면세신청서에 첨부해 관세면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HS Code 제8702호(10인 이상의 수소용 자동차) 및 제8703호(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제8711호(모터사이클)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기부물품이라도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② 법 제91조 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선·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3.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③ 법 제91조 제2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번호 제8711호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 한다.

제40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③ 법 제91조 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인 때에는 해당 시설 및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 또는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수입요건

**가스 난로(화로)를 해외 직구 하려고 합니다.
직구 가능한 물품인지 궁금합니다.**

⋯› 해외 직구 시 개인 특송물품의 수입요건 등은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돼야 합니다. 수출입물품의 HS Code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현품'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문의주신 물품이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레인지(range)·불판·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비큐(barbecue)·화로·가스풍로·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의 '그 밖의 기구'의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에 해당된다면 제7321.81-0000호로 품목분류 될 수 있습니다.

품목번호			품명
7321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레인지(range)·불판·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비큐(barbecue)·화로·가스풍로·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8		그 밖의 기구
	81	0000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참고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모든 요건에 맞는 기구류를 분류한다. (i) 일정 구역의 가열·취사나 끓임 목적으로 열을 발생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ii) 고체·액체·기체연료·다른 종류의 에너지(예: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며 (iii) 보통 가정이나 캠핑(camping)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한정된 공간의 난방(space heating)용·화로용(brazier) 등에 사용하는 형태의 스토브(stove)·히터(heater)·불판 등"이라고 예시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제7321.81-0000호로 분류되는 물품의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가스용품 요건승인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다음의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거 통관하기 전에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수입할 수 있음.
◦ 이동식 부탄연소기
◦ 이동식 프로판연소기

세관에서는 각 개별 법령에서 수입을 위한 자격, 승인, 허가, 신고 등의 요건을 요구하는 물품에 대해 그러한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만을 확인합니다. 요건 구비 대상 여부 및 구비 절차 등은 개별 법령을 소관하는 요건 확인기관에 문의해야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건 확인기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www.kgs.or.kr)

연속 거래에서 과세가격결정 기준거래

이 혜 경 | 관세청 법무담당관실

Ⅰ. 들어가며

수입물품이 해외 공급자에서 최종 수입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에 중간 판매자를 거치는 경우가 있다. 하나의 물품에 대해 '해외 공급자→중간 판매자→수입자'로 이어지는 둘 이상의 매매가 있고 각 매매의 거래가격이 다르다면, 어떤 가격을 기초로 해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한 거래가격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 둘 이상의 연속된 판매가 있을 경우 어느 거래를 기준으로 삼을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따라서 판매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지(the First Sale Rule),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전의 마지막 판매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지(the Last Sale Rule)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올바른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호에 소개하고자 하는 판례는, 이란산 원유의 연속판매 거래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이전에 이뤄진 마지막 거래를 과세가격결정의 기준거래로 봐 후행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경정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해당 판결에서 기준거래를 어떠한 논리로 확정했는지 살펴봄으로써 과세관청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해석이 법원에서도 재확인됐음을 확인하고자 한다.[1)]

Ⅱ.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유, 기타 석유 및 화학제품의 제조, 판매,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13.7.1. 원고의 트레이딩 사업부문이 인적분할돼 설립된 법인으로 원유, 기타 석유 및 화학제품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이란국영석유공사는

1) 대법원 2024.4.12. 선고 2023두63123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및 서울고등법원 2023.11.9. 선고 2022누51910 판결

이란 내 원유와 천연가스를 채굴해 전 세계에 판매하는 이란의 국영기업이다.

나. 원고는 이란국영석유공사와 매년 원유매매계약을 체결해 이란국영석유공사로부터 이란산 Forozan원유(이하 '쟁점원유'라 한다)를 공급받아왔고 2013.1.13.에도 이란국영석유공사로부터 2013.2.1.부터 2013.12.31.까지 쟁점원유를 매수하기로 약정했다.

다. 위 2013.1.13.자 계약에 따른 거래관계가 계속 중이던 2013.7.1.에 B가 설립됐고, 같은 날 원고와 B는 2013.7.부터 2013.12.까지 원고가 B로부터 쟁점원유를 매수하기로 약정했다. 또한 이란국영석유공사는 원고 및 B의 요청 및 그에 따른 협의를 거쳐 2013.7.31. 위 2013.1.13.자 계약의 매수인을 2013.7.1.부로 원고에서 B로 변경할 것에 동의했다. 이후 2013.11.27.에도 원고는 B로부터, B는 이란국영석유공사로부터 각 2014.1.1.부터 2014.12.31.까지 쟁점원유를 매수하기로 계약했다(다만 B와 이란국영석유공사 사이의 계약서는 2013.11.28.에 작성됐다).

라. 위 '다'항 기재와 같은 계약 체결 내지 매수인 변경 등에 따라,

① 이란국영석유공사가 B에 쟁점원유를 판매하고(이하 '이 사건 선행거래'라 하고, 이 사건 선행거래에 관한 이란국영석유공사와 B 사이의 각 쟁점원유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선행계약'이라 하며, 이 사건 선행거래에 따라 B가 이란국영석유공사에 지급한 쟁점원유 대금을 '이 사건 선행거래가격'이라 한다),

② B가 같은 쟁점원유를 원고에게 재판매하는(이하 '이 사건 후행거래'라 하고, 이 사건 후행거래에 관한 B과 원고 사이의 각 쟁점원유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후행계약'이라 하며, 이 사건 후행거래에 따라 원고가 B에 지급한 쟁점원유 대금을 '이 사건 후행거래가격'이라 한다) 거래구조가 형성됐다.

마. 위 거래구조에 따른 합의 하에 쟁점원유는 목적지 인도조건(DAP, Delivered at Place)으로 이란에서 선적돼 대한민국 울산신항으로 운송됐는데, B는 쟁점원유를 실은 선박이 수입항인 울산신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상 수하인을 B에서 원고로 변경했으며, 원고는 선하증권상 수하인 변경통지를 받은 이후 쟁점원유에 대한 '입항전수입신고'를 하고 울산신항의 해저배관을 통해 쟁점원유를 인도받아 원고의 유류탱크로 반입했다.

바. 원고는 2013.7.25.부터 2014.12.26.까지 총 23번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쟁점원유에 대한 수입신고를 했는데, 이때 이 사건 선행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위 23건의 수입신고 중 9건의 경우, 이 사건 선행거래가

격이 이 사건 후행거래가격 보다 낮았다.

사. 피고는 2017.9.18.부터 2017.10.23.까지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후행거래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수출판매에 해당하므로 쟁점원유에 대한 과세가격을 이 사건 후행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각 수입신고 건의 과세가격을 이 사건 후행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증액경정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차액에 대해 원고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합계 24,184,165,610원을 추가로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거부처분[2]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12.7. 및 2020.12.10. 원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Ⅲ. 원고의 주장 요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산출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는 재화 이동이 시작되는 공급장소가 국내가 아닌 수출국임을 의미하는 반면 이 사건 후행거래는 원고가 해외로부터 도착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에서 쟁점원유의 과세가격은 쟁점원유를 수출국인 이란 밖으로 반출하는 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 사건 선행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출돼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쟁점원유의 과세가격을 이 사건 후행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출해야 한다고 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Ⅳ. 원심판결의 판단[3]

가. 쟁점원유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관세법」상 ‘외국물품(제2조 제4호)’에 해당하고, 원고는 수하인 변경통지 이후 ‘외국물품’인 쟁점원유를 우리나라에 반입해 「관세법」상 ‘수입(제2조 제1호)’ 행위를 했다. 원고의 위 ‘수입’에 따라 쟁점원유가 「관세법」상 과세물건으로서 ‘수입물품’에 해당하게 되고(제14조), 「관세법」상 과세표준도 원고가 수입한

2)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연속판매 거래의 과세가격 기준에 관해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취소도 구했으나, 1·2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는 과세가격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가 무엇인지와는 구별되는 쟁점이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고 과세가격결정 기준거래의 판단에 한해 살펴본다.

3) 서울행정법원 2022.6.10. 선고 2021구합57711 판결(대상판결에서 인용)

쟁점원유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정해진다(제15조). 또한 원고가 입항전수입신고를 함에 따라 과세물건이 확정되고(제16조), 원고는 수입신고 대상인 쟁점원유를 수입한 화주로서 쟁점원유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다(제19조 제1항 제1호). 한편 「관세법」 제30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입물품'이 원고가 수입한 쟁점원유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원고의 쟁점원유 수입 및 그에 대한 신고를 기초로 이뤄지게 되므로, 쟁점원유에 대한 과세가격 역시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후행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과세표준 및 과세물건 확정, 납세의무자 결정'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과세가격결정 기준'과 구별해야 하므로 과세표준 및 과세물건이 모두 원고에 의해 확정되고 납세의무자도 원고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과세가격결정 기준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표준 및 과세물건 확정, 납세의무자 결정'과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과세가격결정 기준'을 무관하게 봐야 할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의하면 쟁점원유에 대한 과세표준을 '원고가 수입한' 쟁점원유의 가격 또는 수량을 기준으로 확정하면서 과세가격은 위 과세표준 확정과는 무관하게 원고와 별개의 독립된 당사자들 사이에서 결정된 이 사건 선행거래가격에 따라 산출하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관세법」의 통일적·체계적 해석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다. 관세평가 대상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 둘 이상의 연속적인 판매 등 거래가 행해지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거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해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이를 받아들인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초 판매'에 따른 거래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아야 할지(이른바 'the First Sale Rule'), '최후 판매'에 따른 거래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아야 할지(이른바 'the Last Sale Rule')가 문제되는데, 위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예해(commentary) 22.1은 후자의 견해에서 "연속판매 상황에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에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첫 번째(또는 이전) 판매 대신에 수입국으로 물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마지막 판매에서 지급된 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4)]

이를 고려하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외국에서 '최초 판매'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해석이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4)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후에 시행된 관세청 고시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2항 또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은 "해당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에서의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해 예해 22.1과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대한 보편화된 해석방법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이상, 예해 22.1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에서 연속된 거래 중 최후 거래에 해당하는 이 사건 후행거래를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 기준이 되는 거래(이하 '과세가격결정 기준거래'라 한다)라고 한 것을 두고 피고의 독단적인 견해에 따라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해석을 그르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우리나라)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을 기초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권고의견 14.1에서도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sold for export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 표현의 의미에 대해 "수입자가 검토 중에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매(the immediate sale under consideration)가 '수입국으로 물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1조가 적용될 수 있고, 이것은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 간 이동을 수반(involving an actual international transfer of goods)'하는 거래만이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방법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 제2조 제2호, 권고의견 14.1 등을 고려할 때 '수출'이란 물품이 수입국을 목적지로 해 수출국 밖으로 반출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에서 "쟁점원유를 우리나라로 수출할 목적으로 이란 밖으로 반출함으로써 쟁점원유의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한 이 사건 선행거래가 우리나라에 쟁점원유를 '수출'하기 위한 거래로서 과세가격결정 기준거래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관세의 과세계기가 수출국에서의 '수출' 행위가 아니고 수입국에서의 '수입' 행위라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후행계약은 쟁점원유의 선적 전에 이미 체결됐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후행계약의 경우에도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을 원칙으로 해 쟁점원유의 인도지가 이란, 도착지가 대한민국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원유를 이란에서 반출함으로써 실제적인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는 행위는 이 사건 선행계약의 이행행위임과 동시에 이 사건 후행계약의 이행행위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고의 이 주장에 의하면 어떠한 거래에서의 거래가격을 대상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산출해야 할 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다(이 사건에서는 쟁점원유의 운송조건이 FOB 조건이 아닌 DAP 조건으로 합의돼 이란국영석유공사가 그 책임으로 쟁점원유를 울산신항까지 운송했으나, 이러한 물품 인도조건은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동일한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WTO 관세평가협정」제1조, 권고의견 14.1,「관세법」제30조 제1항 등에서는 연속된 거래에 있어 관세의 과세가격결정 기준거래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반면, 이러한 규정 해석에 참고할 예해 22.1에 의하면 연속된 거래에 있어 관세의 과세가격결정 기준거래는 수입국으로 물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마지막 거래라고 보는 것은 앞서 봤는데, 결국「WTO 관세평가협정」제1조, 권고의견 14.1,「관세법」제30조 제1항이 위 예해 22.1의 내용과 달리 해석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권고의견 14.1의 예시 2는 "수입국 L의 구매자 M은 동일한 L국의 판매자 N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다. N은 물품을 O국에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 O국에서 물품의 선적 및 수출을 위해 필요한 준비는 N이 완료하고 물품은 M이 L국으로 수입한다. 판매가 특정 수출국에서 발생할 필요는 없다. 판매자 N이 O국, L국 또는 제3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구매자 M과 판매자 N 사이의 거래는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이고 제1조에 따른 평가의 기초가 될 것이다"라고 규정해 판매가 특정 수출국에서 발생할 필요는 없고, 동일한 국가에 소재한 판매자 및 구매자 사이에서도 과세가격결정 기준거래인 수출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위 예시 또한 수출국에서 수입물품을 반출하는 거래만을 관세의 과세가격결정 기준거래로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원고와 이란국영석유공사 사이에서 본래 직접 이뤄지던 원유거래는 B의 설립이라는 원고 측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선행거래와 이 사건 후행거래 두 단계로 분리된 점, 이란국영석유공사는 거래구조 변경 경위에 대해 인지하고 거래구조 변경에 관여한바 거래구조 변경 후에도 원고가 쟁점원유의 최종 매수자임을 알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선행계약 및 이 사건 후행계약은 쟁점원유의 이란에서의 선적 전에 모두 체결된 점, 이 사건 선행계약 및 이 사건 후행계약의 주요 계약조건들이 대부분 동일하며 특히 이 사건 후행계약 또한 이 사건 선행계약과 동일하게 인도지를 이란, 도착지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선행계약에 따른 쟁점원유 선적 스케줄 및 물량 등에 대해 원고와 B가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이란국영석유공사 사이의 직접 거래가 이 사건 선행거래와 이 사건 후행거래의 연속판매 거래구조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원고가 이란국영석유공사로부터 쟁점원유를 매수하는 거래에서 종래 원고의 트레이딩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B가 쟁점원유의 운송 부분에 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쟁점원유의 대금으로 지불한 이 사건 후행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는 것은 이러한 거래의 실질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바.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후행거래에 따라 해외로부터 도착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받아 수입했을 뿐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후행거래는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거래가 아니어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선하증권 양수도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에서의 공급가액(이 사건 후행거래가격)이 아닌 해외로부터의 공급가액(이 사건 선행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또한 쟁점원유의 과세가격결정 기준거래가 이 사건 선행거래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원유의 과세가격결정 기준거래는 이 사건 후행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Ⅴ. 대상판결의 추가 판단

1. 이란국영석유공사와 B 사이의 선행거래가 수출판매거래이고, B가 쟁점원유의 수입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후행거래는 수입 이후에 발생한 별개의 국내 거래인지 여부

① 이 사건 선행계약과 이 사건 후행계약을 비교해 보면 가격조건 및 계약당사자를 제외한 선적항, 양륙항, 해상운송조건, 대금지급조건 등이 동일하고 양 계약 모두 이란에서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의도한 전형적인 수출판매계약에 해당한다.

② B는 이란국영석유공사로부터 배서양도를 받은 선하증권의 적법한 권리자로서 쟁점원유를 실은 선박이 울산신항에 입항하기 직전 원고 등 관련자에게 수하인 변경통지를 했다. 이는 운송 중 우리나라 관세영역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뤄진 것이므로, 적어도 B는 쟁점원유가 우리나라에 진입하기 전에 원고에게 인도받을 권리, 즉 처분권을 이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선행계약과 후행계약은 모두 이란국영석유공사가 선적물량과 선적일자 등을 확정하는 확정(Confirm) 메일을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선적 전월에 체결됐다. 이처럼, 이 사건 후행거래는 B가 이란국영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한 쟁점원유를 선적 전에 이란에서 원고에게 전매하는 구조이고, B와 원고 간 수하인변경절차는 이미 체결된 이 사건 후행거래의 이행(처분권 이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후행거래를 수입국 즉 국내에서의 연속거래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선행거래와 후행거래는 모두 이란으로부터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한 수출판매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B의 쟁점원유 수입자 여부

①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4.1에서 관세협력이사회의 국제관세용어사전에서 '수입'은 '어떤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가져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권고의견이나 예해 22.1에 따르면 운송 중에 특정 시점에 수입하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주체가 바로 '구매자'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물품은 국제간 이동이 종료된 이후 수입국의 통관 전에 다시 거래가 이뤄진 것이 아니다. 쟁점원유의 국제간 운송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란국영석유공사와 B, B와 원고 간의 계약은 이뤄졌고, 쟁점원유가 운송되는 가운데 원고가 이를 수령할 권리를 가지고 입항전 수입신고를 했다. 원고 주장과 같이 실제 국제간 이동이 종료된 다음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관세법」제1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부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해당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의하면, '수입신고된 물품의 관세납부의무자'는 곧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이고 이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쟁점원유에 대한 수입신고인('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은 쟁점원유를 수입해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한 원고라 할 것이다.

④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운송 중인 쟁점원유에 대해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이전받은 원고가 쟁점원유의 화주로서 수입신고를 한 수입자이자 관세납부의무자이고, 쟁점원유의 과세가격은 원고가 쟁점원유의 구매자로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인 이 사건 후행 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출돼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법」과의 통일적 해석의 필요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세법」 제4조 제1항은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육세 등의 내국세와 그 가산세 등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해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교육세법」 등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는 조세행정의 능률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그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실체적 과세요건까지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라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즉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본세를 부과·징수할 때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 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내국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돼야 하고 이와 「관세법」의 관련 규정이 상충된다고 해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두10125 판결 등 참조).

다. 이처럼 관세 외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관세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은 관세와 내국세의 실체적 과세요건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와 「관세법」상 수출판매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돼야 하고, 「관세법」상 수출판매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관세법」 및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라. 따라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거래, 즉 **「관세법」에 따른 수출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법」 및 「WTO 관세평가협정」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일 뿐,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내국세의 실체적 요건과 통일적 해석을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후행거래가격을 관세평가가격으로 보거나 원고를 쟁점원유의 수입인으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과의 통일적 해석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WCO 예해 22.1이 제3국이 개입한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

가. 원고는 '최후 판매'에 따른 거래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아야 할지(the Last Sale Rule) 여부는 제3국이 개입한 상태에서 연속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우리나라(보세구역 포함)에 이르기 전의 거래에 국한해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도착 후 국내에서 거래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거래를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 사건 후행거래는 보세구역 내에서의 거래가 아니므로 이 사건 선행거래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WCO 권고의견 14.1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표현의 의미에 대해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만이 거래가격 방법으로 물품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해 22.1은 연속판매에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의 의미에 대해 “연속판매 상황에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에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첫 번째(또는 이전) 판매 대신에 수입국으로 물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마지막 판매에서 지급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예해에서의 ‘일체의 연속 판매’에는 수입국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최종 거래와 첫 번째 거래를 포함하고 있으며, 위 예해에서는 이러한 경우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다. 특히 위 예해에서는 협정에서의 수입거래가 단일의 판매 또는 연속판매를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거래가격의 결정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연속판매 상황에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때에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첫 번째(또는 이전) 판매 대신에 수입국으로 물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마지막 판매에서 지급된 가격이라고 결론짓는다.

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후에 시행된 관세청 고시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2항 또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이 수 개의 연속된 거래(연속판매)에 의해 우리나라에 도착한 경우, 거래가격의 기초는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last sale)’에서의 실제 지급가격이어야 한다는 예해 22.1의 ‘the Last Sale Rule’을 반영해, “해당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에서의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해 WCO 권고의견 14.1의 ‘실제적인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와 위 예해 22.1의 ‘the Last Sale Rule’을 반영했다. 이에 제3국의 개입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권고의견 14.1, 「관세법」 제30조 제1항 등에서는 연속된 거래에 있어 관세의 과세가격결정 기준거래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반면, 위 규정들의 해석에 참고할 예해 22.1에 의하면 연속된 거래에 있어 관세의 과세가격결정 기준거래는 수입국으로 물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마지막 거래라고 봤는데, 결국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이라는 표현은 국제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로 물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마지막 판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원고 주장에 따라 예해 22.1을 이 사건에 적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예해는 연속판매에서 마지막 판매에 기초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아, 거래가격 결정의 일관성이라는 「WTO 관세평가협정」의 목적과 전체적인 문맥에 부합해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권고의견 14.1, 「관세법」 제30조 제1항이 위 예해 22.1의 내용과 달리 해석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중개료, 용기비용, 포장소요비용,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임, 보험료, 운송관련 비용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해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라는 원칙과 거래가격은 해당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수수료 등 이른바 가산비용을 더한 것임을 밝히고 있어 종국적으로는 'the Last Sale Rule'과 동일한 관점을 보이고 있는 점,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게 된다면, B보다 이전 시점에 제3자가 다른 가격으로 이란국영석유공사로부터 쟁점원유를 매입한 경우에 대해 과세가격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종국적인 거래가격인 이 사건 후행거래가격이 이 사건의 과세가격이 됨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Ⅵ. 결어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관세법」상 수입과 과세요건의 체계를 살펴, 쟁점원유는 외국물품이고 원고가 입항전수입신고를 함으로써 과세물건이 확정되며, 원고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과세표준은 원고가 수입한 쟁점원유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과세가격만 원고와 무관한 당사자 사이의 거래로 정하는 것은 체계적 해석에 반한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관세법」 체계 해석을 바탕으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이라는 표현이 국제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마지막 판매를 의미한다고 봤으며, 과세가격이 거래가격이라는 원칙, 그리고 거래가격이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한 것이라는 제30조 제1항의 구조도 결국 'the Last Sale Rule'과 같은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거래 형식이 다단계로 복잡해지더라도 과세가격의 출발점은 결국 '수입'이라는 관세의 과세계기에 있음을 다시 확인해 줬다. 판단이 쉽지 않은 사안일수록 「관세법」상 수입의 개념과 과세요건 체계라는 기본으로 돌아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흑연 소재의 전기저항 히터의 HS Code

전기저항으로 고온의 열원을 생성하는 전열 저항체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검은색의 평범한 돌 하나가 한때 금으로 오인될 뻔했다면 믿을 수 있을까. 흑연은 16세기 영국에서 처음 발견됐을 당시 독특한 검은색과 금속성 광택 때문에 납이나 다른 광물로 오해받기도 했다. 그러나 흑연은 금속처럼 전기가 통하면서도 매우 부드러워 종이에 흔적을 남기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필기구의 재료로 주목받았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연필심의 주요 소재로 자리잡게 됐다.

하지만 흑연의 쓰임새는 연필심에서 끝나지 않았다. 전기가 통한다는 특성이 알려지면서 전극, 발열체, 전기부품 등 다양한 사업 분야로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흑연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전기저항을 이용하면 흐름을 조절하거나 열을 발생시킬수 있어 흑연은 전기·전자 분야에서도 중요한 소재가 됐다.

지그재그 패턴의 판 형상 흑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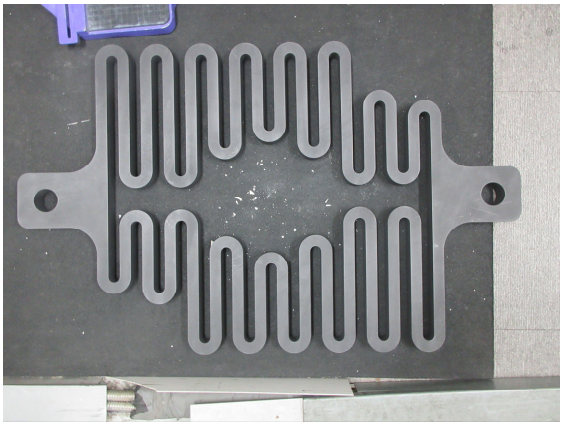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지그재그 패턴의 판 형상 흑연 제품으로 실리콘 잉곳 성장 장비 내부 하단에 설치되는 전기저항 히터로 사용된다. 본 물품을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제6815.19-9000호에 신고했다.

제6815호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 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해설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제6815호 해설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지 않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을 분류하며; 그러므로 예를 들면, 제69류에 해당하는 도자제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천연흑연 · 인조흑연(nuclear grade를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탄소제의 비 전기용품. 예를 들면, 필터 ; 디스크(disc) ; 베어링 ; 관(管) · 덮개 ; 가공한 벽돌 · 타일 ; 섬세한 도안이 있는 소형 물품(예: 수집용의 화폐 · 메달 · 납 제품 병정)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형"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같은 호 해설서 제외규정에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c) **전기용에 사용하는 탄소·브러시·탄소전극과 그 밖의 부분품이나 제품**"

본 물품은 단결정 실리콘 잉곳 성장 장비 내부 하단에 설치되는 흑연 제품으로 전력을 인가할 때 전기저항을 이용해 고온의 열원을 생성하는 전열 저항체이므로, 제6815호에서 제외돼 제854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판단했다.

관세율표 제8545호에는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된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모양·치수·그 밖의 점에 의하여 전기용의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이 포함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품은 그 기본성분[천연탄소·카본블랙(carbon black)·가스카본(gas carbon)·코크스·천연이나 인조흑연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H)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중략〉 … (3) 전열저항체: 봉·바 등의 모양으로 여러 가지 전열기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을 전기저항을 이용해 고온의 열원을 생성하는 전열 저항체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5.90-9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HEATER FOOT	제6815.19-9000호 FCN1 0%	Other Articles of Graphite	제8545.90-9000호 FCN1 1.6%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신간 도서안내

2026 개정판
관세법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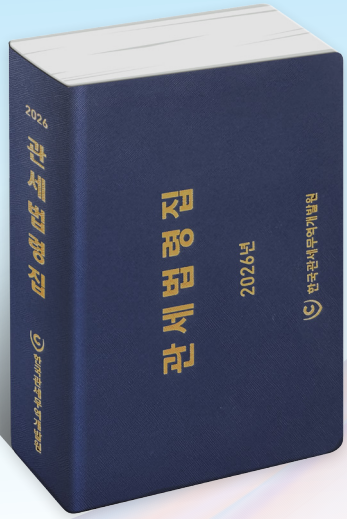

- **관세 행정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록 법령 개편**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등 신규 수록
- **2026년 4월 1일까지 최신 개정 법령 반영**
  최신 법조문과 관련 고시·판례 통합 업데이트
- **법령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단 구성**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관세 · 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2026년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2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사항 수록**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도서 구매 문의 안내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kctdi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더욱 다양한 도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TEL (02)3416-51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